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6. 27 선고 2021가단1180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강승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벳

담당변호사 안준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지영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1. 2.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2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① 원고는 2016. 8. 23. 피고의 아내인 C에게 양산시 D 지상 건물의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171,408,960원을 이자율 연 5.2%, 대출기간 만료일 2019. 7.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C은 위 중도금 대출 당시에 원고에 대하여 시행사인 F 주식회사 및 시공사인 E 주식회사가 위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직접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그 후 위 각 회사들은 위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고, C은 2021. 3. 20.부터의 이자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5. 27. C을 채무자로 하여 위 대출원리금 합계 173,425,010원(=원금 171,408,960원 + 이자 2,016,0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차전118190), C의 이의신청으로 이행된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13479)에서 위 법원은 2021. 10. 13.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의 법률행위 등

① C은 2015. 1. 23. G로부터 양산시 H아파트 I호(이하 'H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21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1.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H아파트에 관하여 2018. 2. 12. J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74,9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② C은 2021. 1. 30. K에게 H아파트를 대금 269,000,000원에 매도하고, 2021. 3. 25. K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H아파트에 관하여 J은행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은 위 매매계약 전날인 2021. 1. 29.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③ 피고는 2021. 1. 25. L으로부터 부산 북구 M건물 N호(이하 'M'이라 한다)를 대금 428,000,000원에 매수하고, 2021. 2.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남편인 피고에게 H아파트의 매각대금 269,000,000원에서 J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74,900,000원을 뺀 나머지 94,100,000원을 증여하였다.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증여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위 2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O은행의 2022. 11. 28.자 금융거래정보

회신, P조합의 2023. 7. 14.자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5. 1. 17. 피고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아파트의 매도인인 G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5. 1. 22. 피고 명의의 위 O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18,000,000원을 출금하였고, 2015. 1. 29. 피고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수표로 179,000,000원을 출금하였다. 위 각 수표는 G에게 지급되었다.

피고는 2015. 2. 10. 피고 명의의 위 O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H아파트의 매수인인 K은 피고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021. 1. 24. 9,000,000원, 2021. 1. 30. 18,000,000원, 2021. 2. 15. 5,000,000원, 2021. 3. 25. 8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K은 2021. 3. 25. 수표로 1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피고 명의의 O은행 계좌에서 M의 매도인인 L 명의의 계좌로 2021. 1. 24. 10,000,000원, 2021. 1. 25. 32,800,000원, 2021. 2. 15. 385,2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의 동생인 Q은 2021. 2. 14. 피고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00,000,000원을 ‘아파트대금’으로 기장하여 송금하였다.

④ Q은 2014. 5. 29. C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C은 2021. 4. 23. Q에게 K이 교부한 위 수표 153,000,000원 및 다른 수표 20,0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피고는 2021. 5. 4. 피고 명의의 O은행 계좌에서 Q 명의의 계좌로 52,000,000원을 ‘빌린돈상환’이라고 기장하여 송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먼저 H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매수인인 K이 교부한 수표 153,000,000원은, C이 Q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C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나머지 매각대금 116,000,000원은 C이 매수인 K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 ① H아파트의 매수대금의 출처가

C이 아니라 피고임이 밝혀진 점, ② H아파트는 C과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곳인 점, ③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④ 위 116,000,000원은 H아파트의 매각대금 269,000,000원의 1/2에 미달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피고에 대한 위 116,000,000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